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확대 및
조정안 수락기한 연장 근거 마련 〉

■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79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이인영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2026. 5. 4.
3. 회 부 일: 2026. 5.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쟁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거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조정이 거부되는 등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단순히 소비자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아 절차가 종료된 경우까지 시효 중단 혜택이 배제되고, 소 제기 유예기간 역시 1개월로 지나치게 짧아 금융소비자의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분쟁조정 신청인 및 관계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해야 하는 기한이 20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내부 의사결정이나 법률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한 내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실정임.

이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예외 사유를 소비자가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거나 절차상 흠결로 인해 조정이 거부된 경우로만 한정하여 그 외에 소비자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 중단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시효중단 효력 유지를 위한 소 제기 유예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안 수락 기한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제7항 및 제40조제1항·제2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신청의 취하, 절차상 흠결 등 일정한 사유로 한정하고, 이 경우 시효 중단 효력 유지를 위한 재판상 청구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안 수락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제7항 및 제40조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36조(분쟁의 조정) ① (생략)	제36조(분쟁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u>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u>
<신설>	4. <u>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u>
<신설>	5. <u>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u>
3. 그 밖에 <u>제1호나 제2호에</u> 준하는	6. ----- <u>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u> -

현행	개정안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 -----. 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금융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조정대상기관²⁾, 금융소비자 및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관계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분쟁조정기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하 “조정대상기관”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2) “조정대상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을 의미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다만,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합의를 권고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음.³⁾
-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나, 금융감독원장이 합의를 권고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취하·각하·기각)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시효가 중단됨.⁴⁾
- 2021년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분쟁의 조정) ①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따라 합의권고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정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시효의 중단)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1.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처리건수 대비 기각·각하 처리건수의 비율이 42.6%~55.3%에 달하고 있음.

< 2021년~2025년 분쟁 접수 및 처리 현황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접수건수	30,495	36,508	35,595	42,265	42,462
총 처리건수	29,279 (100.0%)	34,686 (100.0%)	38,848 (100.0%)	36,856 (100.0%)	43,569 (100.0%)
조정절차 처리(A) ¹⁾	10,843	12,388	15,133	15,721	22,406
자율조정 성립(B) ²⁾	7,565	9,945	13,098	14,477	19,204
합의 권고 및 성립(C)	3,255	2,428	2,032	1,239	3,198
조정위원회 회부	29	18	13	14	14
안건 의결(D)	23	15	3	5	4
(처리기준 등 심의)	(6)	(3)	(10)	(9)	(10)
조정절차 전 처리	18,436	22,298	23,715	21,135	21,163
기각 및 각하 처리 ³⁾	14,552 (49.7%)	19,192 (55.3%)	21,231 (54.7%)	17,455 (47.4%)	18,550 (42.6%)
기타 ⁴⁾	3,884	3,106	2,484	3,680	2,613

주 1) 분쟁민원 처리기준에 대한 심의 등은 개별 민원을 특정하기 어려워 통계에 반영하지 않음

(조정절차 처리(A) = 자율조정 성립(B) + 합의 권고 및 성립(C) + 안건 의결(D))

2) 분쟁조정 처리를 위한 자율조정·사실조회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신청인 사이에 자율조정 성립한 건수

3) 법률·판례·조정선례 등에 비추어 조정 실익이 없거나, 수사진행·소송제기 등으로 분쟁조정이 종료된 건수
(금소법 제36조(분쟁의 조정) 제2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통합하여 관리되고 있음)

4) 민원인 임의철회, 해당기관 이첩 등으로 분쟁조정이 종료된 건수

자료: 금융위원회

○ 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제도는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나⁵⁾,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조정의 효력) 양 당사자가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

불성립되는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됨.

-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불수락으로 간주되며,⁶⁾ 분쟁조정 신청으로 중단된 시효는 새로 진행하게 됨.⁷⁾

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분쟁의 조정) ⑦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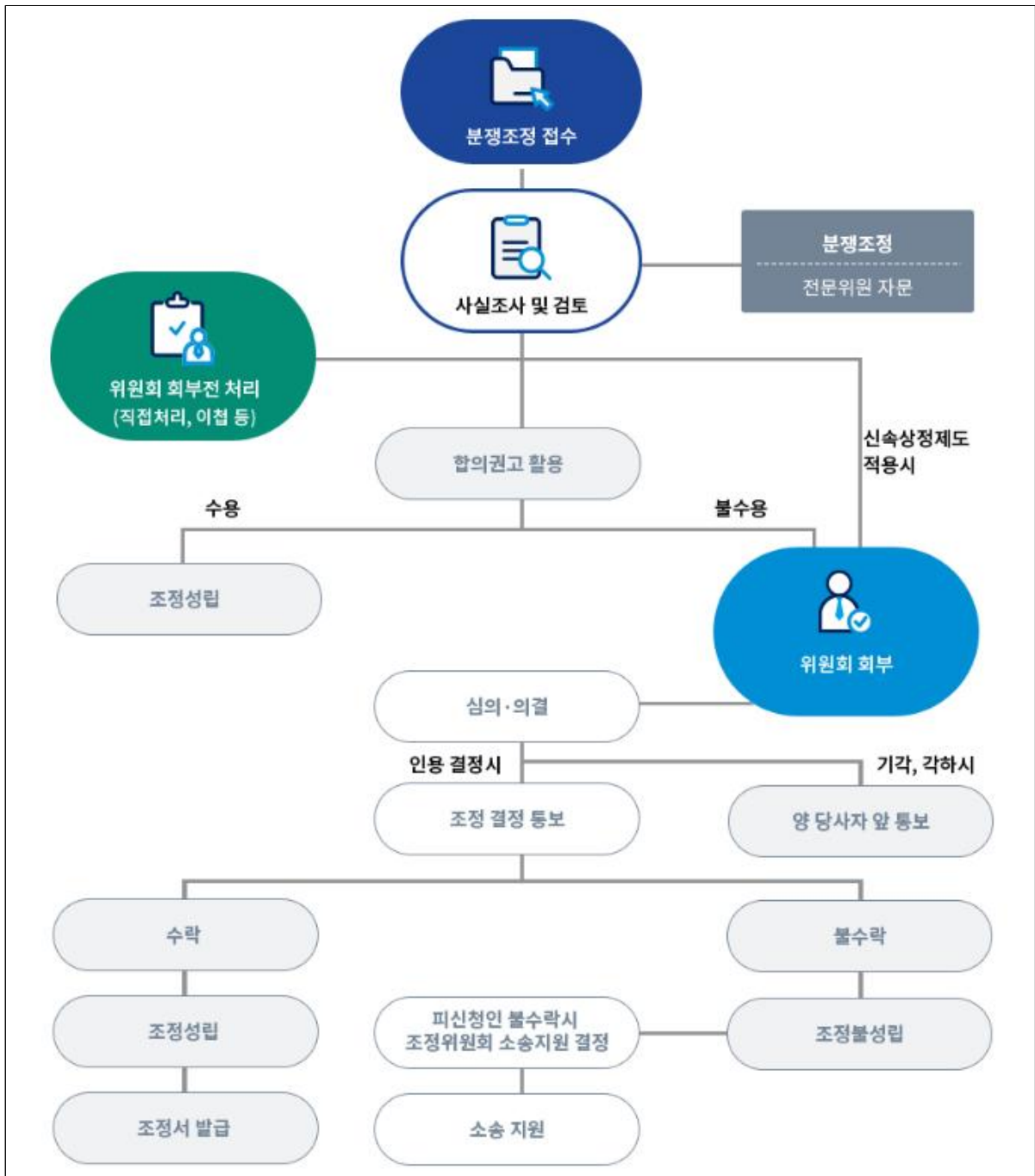
제40조(시효의 중단)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절차 ＞



- 1) 인용결정 : 신청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이는 경우
 - 2) 기각결정 : 신청사항이 이유 없는 경우
 - 3) 각하결정 : 분쟁조정 신청 후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 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등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료: 금융감독원

□ 개정안은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합의를 권고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①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② 신청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신청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신청이 ‘취하’된 경우와 상기 세 가지 절차적 사유에 해당하여 ‘각하’된 경우로 한정하면서, 이 경우에도 소 제기 등을 통해 시효중단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려는 것임.

○ 아울러 개정안은 신청인 또는 관계 당사자에게 20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1회에 한정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해 조정안 수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금융 관련 분쟁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고,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절차 종료 후 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정 결과의 검토, 관련 자료의 정리, 법률 상담 등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

○ 또한 조정안 수락 여부 역시 신청인과 금융기관 모두에게 중요한 법률상 판단을 수반하므로, 일률적으로 20일의 기한 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낮은 ‘기각’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의사·절차상 흠결 등에 따른 ‘취하’, ‘각하’에 한정하여 시효가 진행되도록 하면서 시효중단 효력 유지를 위한 재판상 청구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며, 조정안 수락기한 연장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절차 종료 후에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조정안 수락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수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 ‘상당한 기간’의 의미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연장 사유 및 연장기간의 상한 등을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의 소 제기 유예기간 확대(1개월→6개월)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중앙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이해관계자는 조정절차 종료 후에도 장기간 소송 가능성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 확대 및 관리 부담 확대 우려, 시효중단 수단으로 분쟁조정 제도를 남용할 우려, 「소비자기본법」 등 동일하게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타법과의 형평성 우려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에 대하여는 금융소비자의 소송 준비 필요성, 금융회사 등 상대방의 관리 부담, 다른 분쟁조정제도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소 제기 유예기간 관련 입법례⁸⁾ >

구분	민사 조정법 §35	소비자 기본법 §68의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6	콘텐츠산업 진흥법 §30
소 제기 유예기간	1개월	1개월	1개월	6개월	6개월

□ 개정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분쟁조정절차 종료 후 시효가 진행되는 경우를 소비자의 의사·귀책에 의한 취하·각하로 한정하기 위하여, 시효중단 효력 제외 대상에 안 제36조제2항제6호를 포함하여 기타 ‘각하’인 경우에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음.

< 금융위원회 수정의견 >

개 정 안	금융위원회 수정의견
제40조(시효의 중단)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이 취하된 경우 2. 제3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에 해당하여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시효의 중단)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이 취하된 경우 2. 제36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 까지에 해당하여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 경우

8) 참고자료 참조

【참고자료】 소 제기 유예기간 관련 입법례

「민사조정법」

제35조(소멸시효의 중단) ①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 조정신청이 취하된 때
2.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3(시효의 중단) ① 제58조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제6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경우로 분쟁조정절차 또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 당사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진행한다.
1. 조정이 성립하였거나 제37조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제33조의3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조정의 신청 등)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却下)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0조(분쟁의 조정) ① 콘텐츠사업 또는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거나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제33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의뢰 또는 신청이 취하되거나 제34조에 따라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제33조에 따른 조정조서, 제33조의3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2. 제33조의3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절차가 종료된 경우

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제33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콘텐츠 관련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108